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80호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의 도입·시행에 따라 검사기준과 검사요령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과거시스템 위주의 검사기준과 검사요령을 신규시스템에도 적용하도록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10년 이상설비의 정밀안전검사 제도도입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기준과 검사 요령을 신설함(안 별표 2)
- 나. 별도로 관리되던 안전검사기준과 안전검사요령을 하나로 통합하여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실효성을 향상시킴(안 별표 1)

- 다. '21년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춰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안전기준 개선함(안 별표 1)
- 라. 과거시스템 기준으로 마련된 안전검사 기준 및 요령을 신규시스템에도 적용하도록 와이어로프 측정방법 등을 개선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602호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726(팩스 044-201-5650)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